

의안번호	제 17 호
의결연월일	

의
결
사
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4. 6. 18.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	----

제출일자 : 2004. 6. 18

제출자 :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4. 주요도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4.5.26 ~ 6.16)결과 제출된 의견

- 제출자 :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건명	주요 내용	시방침
비밀엄수 조항 신설 반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내부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삭제요망	○이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전공노(본부)에서 상호 협의 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벗어난 개정안은 어려운 실정임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 반대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건은 중앙에서 협의중이므로 보류 또는 개정 반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반대	2006.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 반대	○차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중 출산란의 일수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 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 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 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 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비밀 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 -----.</p>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제18조(연가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일수
-----	<u>3</u>
-----	<u>6</u>
-----	<u>9</u>
-----	<u>12</u>
-----	<u>14</u>
-----	<u>17</u>
-----	<u>20</u>
-----	<u>21</u>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u>1</u>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	-----	<u>3</u>

관 계 법령 발췌

第52條 (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第59條 (委任規定)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1條 (地方自治團體의 人事行政에 관한 指導 · 監督) 教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市 · 道의 人事行政이 이 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指導 · 監督하고, 市 · 道知事는 당해 市 · 道의 管轄區域안의 市 · 郡 · 區의 人事行政이 이 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指導 · 監督한다.